

성남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1556
----------	------

□ 제안이유

-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2005. 8. 5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·정비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『지방자치법 시행령』 제51조(의정활동비,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) 관련 별표 6의 회기수당지급범위의 개정에 따라
- 『성남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』 제3조(회기수당지급) ②제1항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“70,000원”으로 하고,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.를 “100,000원”으로 개정,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- 성남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로 함

□ 검토결과

-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개정 사안으로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